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81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태호·성일종·이인선

진종오 • 유용원 • 정동만

박충권 · 조경태 · 윤영석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 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

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호 중 "군인으로서"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1
<u>군인으로서</u> 참전 또는 임무	<u>국군의 구성원으로서</u>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	
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	
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	
다.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